

# 「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」 참여자 모집 공고

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「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」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3일  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
- 지원규모 : 92명

(단위 : 명)

총계	거주지역	사업량	거주지역	사업량	거주지역	사업량
92	청주시	30	옥천군	3	괴산군	3
	충주시	14	영동군	3	음성군	7
	제천시	9	증평군	5	단양군	3
	보은군	3	진천군	12	-	-

- 지원내용 :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(월 최대 2백만원, 최대 6개월)
- 지원대상 :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\*
  - \*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
  -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
  - ② 사업신청일 기준,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
  - ③ 사업신청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
  - ④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

### 《제외대상》\*p4. 「지원금 지급 제외」 참고

- 사업자의 배우자, 직계가족(직계존비속)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·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 
예) 고용노동부 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「대체인력지원금」,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,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,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, 각 시·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.  
\* 수혜 기간 및 타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
-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
-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, 중대재해발생업체,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
- 지원제외 대상업종<sup>[별첨]</sup>

## 2

## 모집개요

### □ 신청모집

○ 신청기간 : 2026. 3. 13.(금) 9:00 ~ (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)

○ 신청방법 : 소상공인24([www.sbiz24.kr](http://www.sbiz24.kr))

\* **마이데이터 동의 필수**(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), 반드시 **거주지 기준**으로 사업 신청

번호	신청서류	비고
1	가족관계증명서	-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로 제출 필수 ※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

\*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제출 기한을 정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완내용 안내

\* 제출 기한 내에 **보완하지 않은 경우, 반려 처리(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**

### □ 지원내용 및 대체인력 채용 조건

○ 지원내용 :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(월 최대 2백만원, 최대 6개월)

#### <지원금 지급예시>

연도	주 근로시간	월급(세전)	산출내역	지원금
2026	주 40시간	2,156,880원	10,320원 × 209시간	2,000,000원
	주 35시간	1,888,560원	10,320원 × 183시간	1,888,560원
	주 30시간	1,620,240원	10,320원 × 157시간	1,620,240원

\*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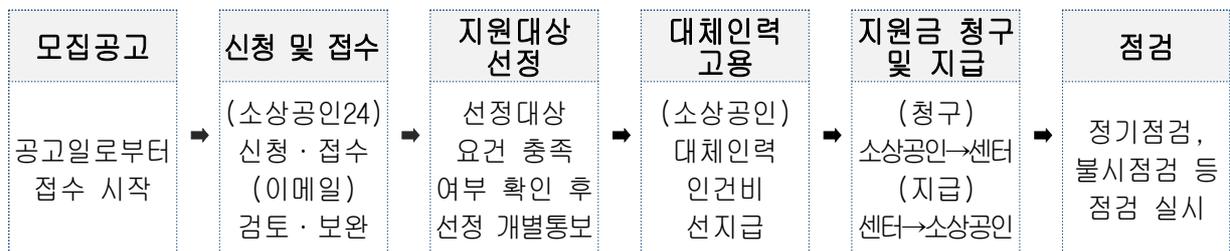
\* 중도 입·퇴사 등의 경우, 일할 계산하여 지급

### ○ 대체인력 채용조건

- 채용 대상 :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,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, 직계가족(직계존비속)은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

- 대체인력 근로조건 :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

### □ 지원절차



### □ 문의처

○ (사업 관련 문의)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: ☎043-230-9769

○ (신청시스템 관련 문의) 소상공인24: ☎1644-5302

### 3

## 선정 및 지원금 지급

#### □ 선정방법

##### ○ 선착순 원칙

- 신청기간 동안\* 지원 목표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다음 우선순위 적용

\* 매월 1~15일, 16~말일 구분하여 선정통보

#### <우선순위 적용 가점표>

구분	세부 기준	가점(점수)
1) 직전 연도 연매출	1천 2백만 원 이상 ~ 3천만 원 이하	100점
	3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	90점
	4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	80점
	5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	70점
	6천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	60점
	7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	50점
	1억 원 초과 ~ 3억 원 이하	40점
	3억 원 초과 ~ 6억 원 이하	30점
2)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	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* 주민센터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필수	+10점
	한부모 가정 사업자(가족관계증명서 기준)	+10점
	장애인 사업자 (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)	+10점
3) 다자녀 가구 (만 18세 이하 자녀 수)	3명 이상	+10점
	2명	+7점

\* 동점자 발생시 ①직전 연도 연매출액 가점(점수)이 높은 순, ②경제적 취약계층, ③다자녀 순으로 선정

#### □ 선정통보

##### ○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선정 통보 예정(문자 또는 이메일)

##### ○ 선정통보 이후 1개월 내 대체인력 고용완료\* 필수(미고용시 선정취소)

\* 12월에 선정 통보 받은 경우, 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완료 해야함.

\* 고용완료 :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

-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나, 사업신청일 당시 대체 인력으로 고용\*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가능

\*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을 의미

#### □ 지원금 지급

##### ○ 매월 청구에 따른 지원금 후지급(이메일 접수)

- (소상공인)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 ☞ (센터) 증빙서류 검토  
☞ 청구인(소상공인) 명의의 통장에 입금

- 선정자(소상공인) 대상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

##### ○ 시·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일괄지급 가능(사전협의)

## 4

### 기타사항

#### □ 지도·점검

##### ○ 정기점검

- 소상공인 및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정기 현장점검 실시
  - 정기 지도점검 진행시, 사업장 내 인사노무서류 비치
    - 근로자명부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명세서, 고용·퇴직 관련 서류 등
- \* 근로기준법 제42조, 시행령 22조

##### ○ 불시점검

- 무작위 선정 또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사전 제출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정보를 토대로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

## 5

### 유의사항

#### □ 지원금 지급 제외

-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
- **정당한 사유(4대보험 관련 법률 등) 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**
  - \*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포함
-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,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, 또는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경우
-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
- 지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
- **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**
-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하거나,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
- 기타 사업지침에 위반되거나,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# □ 부정수급 처리 방안

-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며,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보조금법」에 따라 처리
  - 1) 부정이익 환수 :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,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
  - 2) 제재부가금 부과 : 환수에 추가하여,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

# 별첨

# 지원제외 대상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